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규정

제정 2007. 3. 1.
개정 2024. 3. 1.
개정 2024. 8.14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교법인을지학원(이하 “법인”이라 한다) 정관 제39조의 규정 및 을지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교원인사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5명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한다.

② 교무혁신처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. 단,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교원인사위원회로 대치할 수 있다. (개정 2024.3.1., 2024.8.14.)

③ 위원장은 교무혁신처장이 된다. (개정 2024.3.1.)

④ (삭제 2024.8.14.)

제3조(위원장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관리한다.

②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.

제4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,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정년보장 임용여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(개정 2024.3.1.)

④ 위원 중 자신에 관한 심의 시에는 그 심의에 참석할 수 없으며, 이 경우 위원장은 참석할 수 없는 위원의 수만큼 재적위원에서 감한 수를 재적위원 수로 한다.

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출석위원의 서명 날인을 받은 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5조(심사기준 및 방법) ① 정년보장교원임용여부 심사는 본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수평가지표 기준에 의거 교원임용평정표(별지 제1호 서식)의 각 항에 심사하되 평점 총계가 100점 이상이어야 한다.

1. 교육자로서의 기본자질
2. 학문적 연구 능력
3. 교수능력
4. 학생지도능력
5. 국가사회 또는 본교에 대한 기여도
6. 근무태도

② 정년보장교원임용후보자는 간이 연구업적 평가표(별지 제2호 서식)의 기준에 따라

평가한 현 직급 임용 기간의 연구업적이 연평균 45점 이상이어야 한다. (개정 2024.8.14.)

③ 제2항의 연구업적 점수 기준이 미달되는 임상의학전임교원의 경우 대학 및 임상진료과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년보장 임용의 필요성이 있을 시 연구업적 점수 기준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. (신설 2024.8.14.)

제6조(심사자료) 정년보장 교원임용 심사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원인사기록카드
2. 연구 실적물
3. 간이 교수업적심사평정표(별지 제2호 서식)
4. 부교수 근무기간의 강의평가표(전산양식)
5.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

제7조(심사평정) 위원장은 제5조 각 호의 평점을 위하여 교내외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.

제8조(평정표의 제출 및 심의) ① 위원회에서 위촉한 심사평정자는 교원임용평정표 (별지 제1호 서식)와 간이교수업적심사평가표(별지 제2호 서식)를 총장이 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총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정년까지 임용할 대상자만 교원인사위원회에 임용 동의를 요청한다.

제9조(정년보장 심사대상)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 중 정년까지 임용할 수 있는 교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.

1. 교수로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자
2.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 임용되는 자
3. (삭제 2024.8.14.)

제10조(탈락자의 재심의) ① 정년보장심사 대상자 중 연구실적 외의 항목의 점수가 부족하여 심사에서 탈락한 자는 2주 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.

② 재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총장은 즉시 이를 위원회에 송부하여 재심의하게 한다. 만약 위원회가 재심의 신청자로부터 직접 소명을 듣기를 원하는 경우 총장은 위원장에게 추후의 일정을 결정하게 한다.

③ 재심의에서도 탈락한 교원은 해당 연도에는 정년보장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.

④ 연구 실적이 부족하여 탈락된 교원은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해당 연도에는 정년보장 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.

제11조(정년보장 임용 제외자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년보장 교원임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.

1.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
2. 국가공무원법 제70조 규정의 직권면직 해당자
3. (삭제 2024.8.14.)
4. (삭제 2024.8.14.)
5. 2회 이상 심사에서 탈락한 자

6.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(신설 2024.8.14.)

7. 기타 정년보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(신설 2024.8.14.)

제12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［별지 제1호 서식］

교원임용평정표

피평정자	소속: 직위: 직명:	성 명 :	평가자	을 지 대 학 교 대학 학과(부) 성 명 : (인)

구 분	A(5)	B(4)	C(3)	D(2)	E(1)	평 점 계	평 균 평 점
심사점수							

구 분 평가영역	평 정 항 목	실적 및 의견	평 정				
			A	B	C	D	E
1. 교육자로서의 기본적 자 질	(1) 교육자로서의 기본품성(사람됨)						
	(2) 조직구성원 간의 인간관계						
	(3)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사회적 품위						
	(4) 교내외 생활태도 및 품행						
	(5) 국가관						
2. 학문적 연 구 능 력	(6) 소지 학위						
	(7) 외국어 구사능력						
	(8) 연구실적물의 양						
	(9) 연구실적물의 질						
	(10) 국내외 학술활동						
3. 교 수 능 력	(11) 교수(강의)능력						
	(12) 강의에 대한 열의 및 수업상태						
	(13) 학생반응						
	(14) 학업지도실적(석·박사 배출 포함)						
4. 학 생 지 도 능 력	(15) 학생지도에 대한 열의와 자세						
	(16) 면학분위기 조성 노력과 실적						
	(17) 학생생활 및 진로지도						
	(18) 지도교수로서의 열의와 실적						
5. 기여도	(19) 국가 사회에 대한 학문적 기여도						
	(20) 본교에 대한 애정 및 소속감 (학내외행사 참여도 및 학교명예 등)						
6.근무태도	(21) 타 업무 종사여부						
	(22) 포상 및 징계						
	(23) 준법정신(교육관계법 및 제규정 준수)						
	(24) 근무자세(출퇴근 상태 등)						
	(25) 건강정도(신병 및 결근)						
합 계	125점						

［별지 제2호 서식］(개정 2024.8.14.)

간이 연구업적 평가표

<table>
<tr><th rowspan="2">영역</th><th colspan="3">평가항목</th><th rowspan="2">평가
점수</th></tr>
<tr><th>구분</th><th>세부내용</th><th>항목</th></tr>
<tr><td rowspan="11">연구
실적</td><td rowspan="4">논문
(원저)</td><td rowspan="4">- 제1저자 및 교신저자에 한하여 인정
- Impact Factor 상위 5% 이내 논문의 경우 평가점수 100% 가산</td><td>SCIE, SSCI, A&HCI 등재 국제학술지/건</td><td>10</td></tr>
<tr><td>SCOPUS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학술지/건</td><td>7</td></tr>
<tr><td>한국연구재단 등재(후보)지, 범석학술장학재단 논문집/건</td><td>4</td></tr>
<tr><td>기타 국내 학술지
(교내 학술지 제외)/건</td><td>1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저술</td><td rowspan="2">- 저자 인원별 평가점수 인정환산율
<table><tr><td>단독</td><td>2인</td><td>3인</td><td>4인이상</td></tr><tr><td>100%</td><td>70%</td><td>50%</td><td>20%</td></tr></table>- 대표저자 평가점수 20% 가산</td><td>전문학술저서/편</td><td>15</td></tr>
<tr><td>서평, 편서, 개정증보판/편</td><td>3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연구
사업비</td><td>- 연구사업비 수혜금액 기준 참여교수 1인당 연구사업비로 산출
- 총괄책임자 평가점수 50% 가산</td><td>교내연구사업비
(1,000만원 기준)</td><td>1</td></tr>
<tr><td>- 간접비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
- 연구사업비 수혜금액 기준 참여교수 1인당 연구사업 간접비로 산출
- 총괄책임자 평가점수 50% 가산</td><td>교외연구사업비
(100만원 기준)</td><td>1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특허</td><td rowspan="2">- 등록 완료된 특허만 인정</td><td>국제특허/건</td><td>3</td></tr>
<tr><td>국내특허/건</td><td>1</td></tr>
<tr><td>기술
이전료</td><td>- 참여교수 1인당 대학에 납부한 기술이전료로 산출
- 총괄책임자 평가점수 50% 가산</td><td>기술이전료
(100만원 기준)</td><td>3</td></tr>
<tr><td colspan="4">총점</td><td></td></tr>
</table>